

의안검토보고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7. 2. 20. 광영교 의원 외 5인
2. 건명 :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건요지 : 붙임참조
4. 검토의견 : 붙임참조

위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2월 27일

대전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
전문위원 권태환

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. 2. 20 광영교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7. 2. 20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조례 제5조의 표창장 수여대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의정발전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표창장 수여대상을 세분화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표창장 수여대상을 의정발전부문과 지역사회봉사부문으로 나누고 부문별 표창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5조)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발전 등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시민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, 표창장 수여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이를 의정발전부문과 지역사회부문으로 세분화하고, 각 부문별 표창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안 제5조제2호 지역사회봉사부문 “나”목의 “어려운 이웃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므로,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간 표창계획을 수립 운영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